

주의사항



▶ 낫선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

• 해외병해충 유입 시 사과, 배, 감귤 등 국내 과수 및 농업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. 과수원, 농산물 재배지 등에서 낫선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붉은불개미



과수화상병



코드린나방



과실파리



해외병해충 신고 전화번호

농림축산검역본부 054-912-0667 (식물방제과)
054-912-1000 (내선2)

▶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

•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•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확인방법

www.qia.go.kr ▶ 동물검역 ▶ 수입위험분석 ▶ 해외가축전염 발생동향

•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,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출국신고 스마트폰 모바일웹으로 간편하게 (eminwon.qia.go.kr/m)

입국신고 도착하는 공항·항만에 있는 검역본부 사무실 방문

☎ 대표전화 | 출입국 신고 문의 1670-2870

축산관계자의 범위

- 동물약품 제조·판매자 및 고용인
- 사료 제조·판매자 및 고용인
-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하는 자
- 원유를 수집·운반하는 자
-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종사자
-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*
-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
- 수의사·가축방역사·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자

*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(사실상 거소를 함께하는 가족 포함)

- 외국에서 축산농가, 가축시장의 방문을 자제합니다.
- 귀국후 5일간 국내 가축시설의 방문을 자제합니다.

검역신고 및 문의전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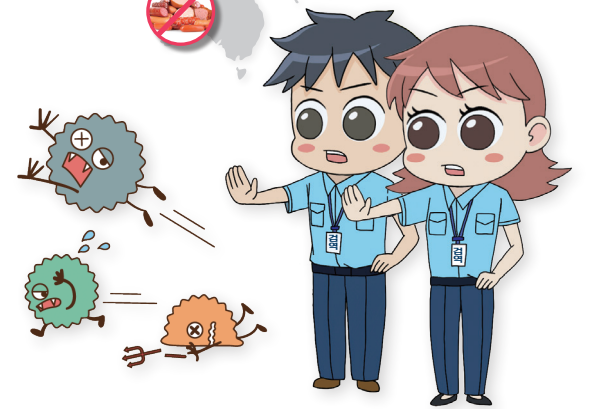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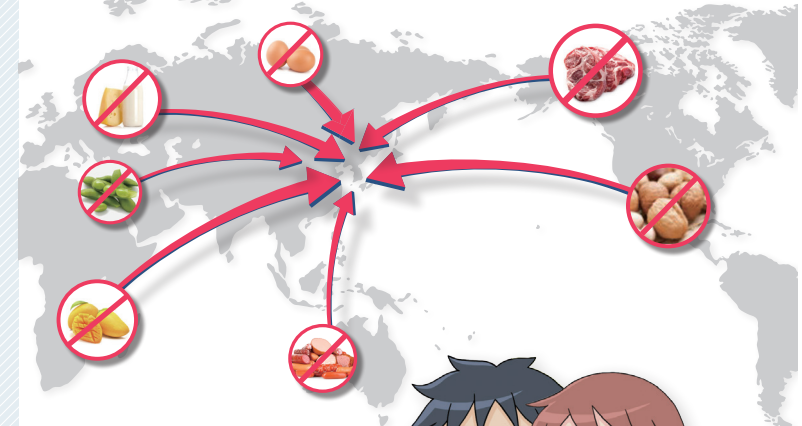
공항만	전화번호	
인천공항지역본부		
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	☎ 032-740-2661	☎ 032-740-2077
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	☎ 032-740-2028	☎ 032-740-2029
국제우편물류센터	☎ 032-740-2684	☎ 032-740-2089
특송물류센터	☎ 032-744-5551	☎ 032-744-5554
영남지역본부		
김해공항	☎ 051-971-4991	☎ 051-971-0480
대구공항	☎ 053-982-5096	☎ 053-981-2838
부산항	☎ 051-441-1835	☎ 051-466-1836
부산국제우체국	☎ 051-971-4991	☎ 055-388-3741
중부지역본부		
인천항 1청사	☎ 032-891-3245	☎ 032-891-3245
인천항 2청사	☎ 032-772-0147	☎ 032-772-0147
청주공항	☎ 043-213-0287	☎ 043-213-0287
평택항	☎ 031-8053-7707~9	☎ 031-8053-7702~4
서울지역본부		
경의선(도라산)	☎ 02-2650-0622	☎ 02-2650-0644
김포공항	☎ 02-2664-0601	☎ 02-2664-3844
동해항·속초항·양양공항	☎ 033-635-9125	☎ 033-635-3862
호남지역본부		
군산항	☎ 063-460-9430	☎ 063-460-9450
무안공항	☎ 062-975-6030	☎ 061-452-6797
제주지역본부		
제주공항	☎ 064-746-0761	☎ 064-746-2460
제주항	☎ 064-728-5350	☎ 064-728-5400

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http://www.qia.go.kr>

동·식물 검역 안내

“외국으로부터 동·식물, 농·축산물은
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.”





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
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**검역**을 실시합니다

검역 절차



- 휴대한 동물, 식물, 농산물,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**1,000만원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- 외국의 농·축산물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신고가 필요합니다.

반드시 신고해야 할 품목

- 곡류, 과일류, 채소류, 견과류, 참깨, 수삼, 건버섯, 한약재, 향신료 등 모든 농산물
- 종자, 묘목, 구근, 삽수, 접수 등 종자 및 묘목류
- 목재 및 목재포장재, 살아있는 병해충

* 종자, 묘목, 구근 등 재식용식물은 식물검역증명서 제출, 미제출 시 사전승인 필요



채소



꽃(절화)



묘목

반입 금지 식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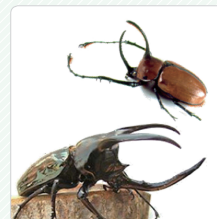
- 망고, 라임, 오렌지, 파파야, 사과, 고추, 풋콩 등 생과채류
- 감자, 고구마, 마, 껍데기가 붉은 호두
- 사과나무, 배나무, 포도나무 등 과수의 묘목·접수·삽수
- 흙, 흙이 부착된 식물, 살아있는 병해충, 잡초 종자 등



생과실, 열매채소



흙부착 식물



살아있는 곤충



금지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
QR 코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반입 제한 품목

- 반려동물 : 개, 고양이, 애완조류 등
- 유가공품 : 우유, 치즈, 버터 등
- 육류 및 육가공품 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소시지, 햄, 육포, 통조림 등
- 동물의 생산품 : 녹용, 뼈, 깃털 등
- 알 및 알가공품 : 달걀, 조류알, 난백, 난분 등
- 반려동물 사료, 간식류 및 영양제 등
- 반입 제한 품목이 포함된 진공 포장된 완제품

❖ 동물과 대부분의 축산물은 **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**가 없을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. (휴대품 포함)
❖ 축산물 또는 이를 포함한 식품을 휴대한 경우 **반입가능여부** 확인을 위해 **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**하시기 바랍니다.



반려동물



유가공품



육류



만두



알



소시지



순대



육포



사료